子心子いないまとるな



금정소식

	기관의장	
선		
람		

입법예고

금정구 구보 호외 제 360-3 2020. 10. 8.(목)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리 공고 제2020-	21호)				2

-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고 제2020-22호) ------ **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고 제2020-23호) ------ **11**

회람				
70				

발 행 : **부산광역시 금정구** 편 집 : 문화관광과(**☎**519-407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고 제2020-21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장

-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발의이유
 -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발원지로 하는 10.16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O 타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4조)
- 추진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참조: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전화 051-519-5511, 519-5512, FAX 051-519-55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20.10.8.(목)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발원지로 하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화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부마민주항쟁"이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타 조례와의 관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 2.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사업
- 3.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 계승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고 제2020-22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장

-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발의이유
 -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배움터가 되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특히 교육격차 완화 노력 등 미래세대 양성에 공정이 깃드는 교육생태계를 조성코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안 제1조~제3조)
- 구청장의 책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제5조)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역량 강화 지원(안 제6조~제7조)
-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교육협동조합 등 지원 (안 제8조~ 제9조)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 (안 제10조~제17조)
- 성과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 (안 제18조~제2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참조: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전화 051-519-5511, 519-5512, FAX 051-519-55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 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 2.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 3.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로 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재워조달에 관한 사항
- 5. 평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 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역량 강화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 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협동조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
- 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 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
- 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교육협동조합의 사업이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 간조성사업비를 해당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 시 금정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 변경
- 2. 구,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연계·협력
- 3. 마을교육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
-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평생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 국장
 -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3. 관내 학교,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대표하여 연계 · 협력을 담당하는 사람
 - 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성과평가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여 제10조에 규정된 위원 회에 보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있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학교, 비영리 법인,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10.8.(목)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고 제2020-23호

부신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항상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장

-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 2. 발의이유
 -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디지털 정보 습득과 이용에서 소외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가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감염병 전파 우려와 깜깜이 감염 증가로 각종 사회 서비스도 비대면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있고, 사람이 모이는 것조차 위험한 상황에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절실 함. 정보접근성 향상이 곧 생존, 사회안전망과 직결되기 때문임.

○ 따라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접근 자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적 지원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3조~제4조)
-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안 제5조~제6조)
- 교육 및 홍보, 위탁,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제9조)
- 포상 (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참조: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전화 051-519-5511, 519-5512, FAX 051-519-55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노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금정구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 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수준 향상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 3.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
- 4. 재위 조달
-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
 - 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 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 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 5.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
- 6.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 7.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구청장은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등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타구· 군 및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